

##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1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6월 5일
4.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 II.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조 7,067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2조 4,677억 7천 1백만원에

대비하여 5.3%(2조 2,390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조 2,736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조 8,924억 7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조 4,331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465억 4천 3백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예산	증감	%
계	44,706,792,841	42,467,771,092	2,239,021,749	5.3
일반회계	32,273,685,724	30,381,207,149	1,892,478,575	6.2
특별회계	12,433,107,117	12,086,563,943	346,543,174	2.9

### 3.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세입

- 2020년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57억 2천 5백만원 대비 643억 9백만원(12.7%)이 증가한 5,700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는 행정안전부 결정통지에 따른 보통교부세(△97억 3천 5백만원)와 소방안전교부세(△188억원)를 감액하고, 추가경정 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 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의 예수금수입(890억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55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16억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0,035	505,725	64,309	12.7	
일반회계	424,244	363,779	60,465	16.6	
세외수입	공 유 재 산 임 대 료	2,550	2,550	-	-
	기 사 용 타 료	124	124	-	-
	그 외 수 입	9,304	9,304		
	지 난 연 도 수 입	15	15	-	-
지 교 부 세	보통교부세	146,617	156,352	△9,735	△6.2
	소방안전 교부세	26,533	45,333	△18,800	△41.5

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101	101	-	-
내부거래	예수금수입	239,000	150,000	89,000	59.3
특별회계		145,791	141,946	3,412	2.4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30,148	30,148	-	-
내부거래	순세 잉여금	△1,655	0	△1,655	△100
	기타회계 전입금	117,298	111,798	5,500	4.5

## 나.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22억 4천 6백만원에서 4,028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9,951억 4천 2백만원임.

### <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본예산	증감 (C=A-B)	%
계	995,142	592,246	678,306	402,896	68.0
일반회계	988,542	585,514	602,274	403,028	68.8
행정운영경비	1,313	1,313	1,313	-	-
재무활동	483,231	127,731	141,333	355,500	278.3
사업비	351,715	327,073	330,231	24,642	7.5
예비비	152,283	129,397	129,397	22,886	17.7
도시개발특별회계	6,260	6,291	75,591	△31	△0.5
재무활동	6,072	6,072	75,372	-	-
예비비	188	219	219	△31	△14.2
균형발전특별회계	341	441	441	△100	△22.7
예비비	341	441	441	△100	△22.7

- 재무활동은 감채기금 적립금 3,500억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5억원을 합쳐 총 3,555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88억

8천 6백만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3천 1백만원을 감액했음.

- 사업비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46억 8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시정계획 수립 조정 등 4개 사업에서 4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46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했음.

###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68.6%, 2020.4)을 기록하였고, 수출 또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하는 등 경기 하방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음.
- 다만, 5월 이후에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진작 효과 등으로 위축되었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35조 3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0.6.4.).
  - 이번 추경은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11조 4천억원)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패키지(18조 9천억원)로 구성됨.
- 서울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생태문명 전환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조 2,390억원 증액(5.3%)된 44조 7,067억 9천만원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공공 및 뉴딜일자리 창출(3,022억원), 그린뉴딜 확대(750억원), 스마트 시티 실현(573억원), 경기부양 SOC투자확대(810억원), 코로나19 손실 보전(846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1,583억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658억원), 로컬 자생력 강화(303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의무 경비(1조 2,219억원) 등 총 2조 5,27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2,880억원을 감액하였음.

## 2.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가. 세 입

- 2020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5,700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5,057억 2천 5백만원) 대비 643억 1천만원 증액(12.7%)되었음.

###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본예산	증 감 (A-B)	산 출 내 역
총 계	570,035	505,725	369,327	64,310	
일 반 회 계	424,244	363,779	213,779	60,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과 2019년 정산분 및 2020년 정부 추경분 반영(△97억 3천 5백만원)</li> <li>◦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188억원)</li> <li>◦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일반회계 자원 보전(890억원)</li> </ul>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45,791	141,946	155,548	3,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반영(△16억 5천 5백만원)</li> <li>◦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추경 예산 세출규모 증가로 인한 균형 발전특별회계 자원보전(55억원)</li> </ul>

-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확정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97억 3천 5백만원과 소방 안전교부세 18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추가경정예산 세출증가에 따른 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의 예수금수입 890억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5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일반회계의 예수금 수입 스타트업 기업 육성(605억원), 로컬 자생력

강화(303억원),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소상공인 지원(468억원) 등의 추경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것임.

- 그러나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는 것은 SOC조성, 지방공기업 융자나 동 청사 등 자치구 영선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사업 비용의 융자, 지방채 예수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용도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은 2019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16억 5천 5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부서인 문화본부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임.
-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집행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예산계획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되며, 세입과 세출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적 문제로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 나. 세 출

- 2020년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9,951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922억 4천 6백만원 대비 4,028억 9천 6백만원이 증액(68.0%)되었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	증감	산출내역
합계	995,142	592,246	678,606	402,896	
시정계획 수립 조정	667	682	712	△15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외 업무여비 추가 삭감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96	104	114	△8	◦ 시민행복위원회 당연직 위원회의회의수당 감액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86	291	321	△5	◦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을 실무자 교육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른 감액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10	-	25	△15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울 살림 토론회 개최' 비용 감액
예비비	152,283	-	129,397	22,886	◦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한 예비비 증액
예비비(도시개발)	188	-	219	△31	◦ 추가경정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한 예비비 감액
예비비(균형발전)	341	-	441	△100	◦ 추가경정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한 예비비 감액
균형발전특별회계 출	117,298	111,798	125,400	5,500	◦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추가경정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규모 증가로 자원 보전
감채기금적립	350,000	-	-	350,000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	226,174	-	201,489	24,685	◦ 행안부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운용계획에 따른 출연금 납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추가 조정이 필요한 시정계획 수립 조정,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등 4개 사업에서 4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하반기 재난·재해에 대비해 일반회계 예비비를 증액(228억 8천 6백만원)

하고,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3천 1백만원과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음.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잔액 50%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5,993억원)하여야 하나 포스트코로나, 재난대비 등 재원확보 등을 위해 3,500억원만 적립하였음<sup>1)</sup>.
- 이 밖에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세출규모가 증가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출금(55억원)을 증액하고,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용계획’에 따른 출연금 확정에 따라 내시액과의 차액분(246억 8천 5백만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추가로 출연하였음.
- 이상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편성된 제3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추경편성의 기본요건인 시급성과 필요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연도내 집행가능성과 추경편성원인을 해소하는 사업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1)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2020.04.29.)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규정이 신설됨.

### 3. 주요 사업 검토

#### 가.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별설명서 287쪽)

-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수립,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 성과 극대화와 시정공약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감액한 6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했음.

#### < 시정계획 수립조정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A)	제2회추경(B)	기정예산	증감 (A-B)
계	667,100	682,100	712,100	△15,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980	86,980	86,980	0
사무관리비	359,463	359,463	359,463	0
국외업무여비	15,000	30,000	60,000	△1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457	75,457	75,457	0
특정업무경비	130,200	130,200	130,200	0

- 감액 항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국외업무여비로 ‘시정현안 업무추진 관련 국외시찰’의 3회분에 해당함.
  -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외업무여비 상반기 6회분(3천만원)을 감액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하반기에도 집행이 불투명해져 추가 감액을 하는 것임.
- 한편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정고문단 관련 비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고문단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미비가 지적되었고<sup>2)</sup>,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시정고문단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감액의 여지가 있음.

## 나.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사업별설명서 292쪽)

-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행복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백만원을 감액한 9천 6백만원을 편성했음.
-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5천 4백만원) 중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예산임.

### <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A)	제2회추경(B)	기정예산	증감 (A-B)
계	96,446	104,446	114,446	△8,000
사무관리비	45,750	53,750	63,750	△8,000
공공운영비	15,696	15,696	15,696	0
연구용역비	35,000	35,000	35,000	0

- ‘시민행복위원회’는 「서울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에 따라 서울시 행복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며, 20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6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음.

2) 서울시는 법적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 조례안」을 제출(2020.2.12.)했으나, 시정고문단과 별도의 자문기구인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을 철회(2020.2.14.)하였음.

### <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기 : '20. 6. 1. ~ '22. 5. 31. (2년)</li> <li>◦ 구 성 :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 공동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발)</li> <li>- 당 연 직 :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문화본부장, 복지정책실장, 주택건축본부장(7명)</li> <li>- 위 촉 직 : 12명(시의원 2명 포함)</li> </ul> </li> </ul>
---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예산을 1천만원 감액한 바 있으나, 회의수당 지급이 불가한 당연직과 시의원에 대한 예산의 추가감액요구가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를 반영한 것임.

### <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산출근거 >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회의 11백만원 (150천원*35명*2회)</li> <li>- 분과위원회 7백만원 (100천원*10명*7회)</li> <li>- 실무협의회 3백만원 (100천원*5명*6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회의 3백만원 (150천원*10명*2회)</li> <li>- 분과위원회 7백만원 (100천원*5명*14회)</li> <li>- 실무협의회 3백만원 (100천원*5명*6회)</li> </ul> </li> </ul>

#### 다.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296쪽)

- 자치법규, 입법예고 등의 법무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에게 입법편의와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5백만원을 감액한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했음.

-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2억 6천 1백만원) 중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예산임.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A)	제2회추경(B)	기정예산	증감 (A-B)
계	285,836	290,836	320,836	△5,000
사무관리비	255,746	260,746	290,746	△5,000
공공운영비	28,232	28,232	28,232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8	1,858	1,858	0

- 당초 4월에서 7월까지 권역별로 개최예정이던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은 별도의 행사 없이 실무교육(1회)으로 대체될 예정임.
- 이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무관리비(3천만원)를 감액한 바 있으며, 시의회에서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의 추가감액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사무관리비 감액 내역 >

사무관리비 세부사업	2회추경	3회추경	최종
◦ 종이법규집 등 추록, 가제			4,065만원
◦ 자치법규 외국어 서비스(영문, 중문)			9,500만원
◦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홍보추진	△1,000만원		1,000만원
◦ 법령·제도 개선 제안집 발간			3,200만원
◦ 자치법규 입력작업 용역			4,310만원
◦ 헌법탐방코스 홍보물 등 기획, 디자인 및 제작	△1,000만원		1,000만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	△1,000만원		2,000만원
◦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개최		△500만원	500만원

## 라.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사업별설명서 301쪽)

-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재정운용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정주권을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편성했음.
-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중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 예산으로 토론회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

### <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증감 (A-B)
계	9,660	25,000	△15,340
사무관리비	9,660	25,000	△15,340

### < 사무관리비 감액 내역 >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운영	2,500만원
- 회의참석수당	900만원
- 발제자 원고료	66만원
-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	1,534만원 → 0만원

- 토론회 행사의 취소로 인해 이에 부수되는 ‘회의참석수당’ 과 ‘발제자 원고료’ 또한 감액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이 예산을 활용해 ‘재정분권’ 관련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분권’은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이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산출근거 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살림 토론회의 전면취소로 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만큼 ‘회의참석수당’과 ‘발제자 원고료’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을 폐지해야 할 것임.

#### 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사업별설명서 304쪽)

-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용계획’ (2019.12.19.)에 따라 납부 예정인 출연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246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2,261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했음.

####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증감 (A-B)
계	226,174,177	201,489,050	24,685,127
출연금	226,174,177	201,489,050	24,685,12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서울경기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해 지역상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당초 2019년까지 존속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이 개정(2019.12.27.)되면서 2029년까지 10년 연장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상(2020년도 15→21%)과 전환사업계정 신설 등이 이뤄졌음.
- 서울시는 2020년까지 약 1조 9,312억원을 출연하고, 약 1,124억원을 배분 받아(용자계정 474억 제외) 일반재원으로 활용해 왔음.

###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1,497	1,627	1,624	1,428	1,417	2,073	1,952	1,988	1,877	2,251	2,262	
배분금	지원	107	119	135	143	147	73	77	74	79	85	87
	용자						73	77	74	79	84	87

※ 2015년부터 배분금의 50%는 용자계정 적립,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소속인력 파견으로 지원계정에 인센티브(약 1억원) 적용.

-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출연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분금을 받고 있으므로, 기금 배분을 및 배분기준 산정 방식의 변경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바. 일반회계 예비비

- 이미 지출한 예비비를 보충하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28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522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했음.

- 증액항목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228억 8천 6백만원임.

## < 예비비 증액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증감 (A-B)
계	152,283,325	129,397,469	22,885,856
예비비	152,283,325	129,397,469	22,885,856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내의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
- 기정예산 1,293억 9천 7백만원 중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출한 192억원 (일반예비비 50억원, 목적예비비 142억원)을 포함해 316억원이 이미 지출된 바, 7~8월 장마·태풍 등의 재난피해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228억 8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그러나 재해·재난대책을 위해 편성하는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예비비를 증액하고 있어 재해 대응이 목적이라는 증액편성 사유의 설득력이 떨어짐.
- 이번 예비비 증액분이 증액사유와 다르게 긴급을 이유로 일반사업에 활용되거나, 향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